

WTO 설립 이후 10년간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분석

2005. 3

K O T R A

통상전략팀

목 차

i. 자료요약	1
I. 1995~2004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4
가.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4	
나. 조사 방법/5	
다. 조사 결과/6	
II. 결 론	15
## 첨부 1 : 국별 AD 조사개시 내역(1995~2004).....	17
첨 부 2 : 조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제안서	41
첨 부 3 : 일몰재심 제안서	44
첨 부 4 : 연도별/국별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45

【자료요약】

I. 1995~2004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가.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세계 2위

- ☐ WTO 반덤핑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1995~2004년 상반기 동안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총 194건이 개시된 바, 중국(386건)이후 최다 조사개시 건수 기록
- ☐ WTO/DDA 규범 협상을 통한 현행 반덤핑 협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정부는 반덤핑 조사개시 이전부터 단계별로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대응 업계의 애로를 지원하는 수입규제 대책사업을 운영 중인 한편,
 - 일본 및 대만 등 반덤핑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와 반덤핑 프렌즈 그룹을 형성하여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DDA 규범 협상을 적극적으로 주도
- ☐ 현재 반덤핑 프렌즈 그룹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이슈는 약 33개로 이 중 핵심 이슈만을 선별하여, 실질적인 협상 모드로 전환할 필요성 대두
 - 1995~2004 기간 동안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가 개시된 반덤핑 조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개정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목적임.

나. 조사 방법

- ☐ 회원국별로 WTO 반덤핑 위원회에 통보한 문서와 kotra 해외무역관 자체 집계자료를 취합하여 통계자료 작성

다. 조사 결과

□ WTO 창설 이후, 1995~2004년 동안 총 24개 회원국에 의해 206건의 對韓 반덤핑 조사 개시

○ 국별로는 인도가 29건으로 가장 많이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중국 25건, 미국 24건, EU 24건, 호주 18건, 남아공 13건 순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개시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 48건, 섬유 28건, 전기/전자 21건 순으로 조사가 개시됨.

- 철강은 미국(13건), EU(8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은 인도(19건), 중국 (18건), 섬유는 터키와 인도가 각각 (5건), 전기/전자는 EU (6건), 미국 (3건)에서 주로 對韓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음

-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반덤핑 조사개시가 집중된 것은 (총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의 약 62%차지) 글로벌 경쟁 격화로 인해 수출단가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 수출물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일례로, 우리나라의 對中 화학제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증가

- 또한, 최근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활발히 개시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주요 내수산업이 화학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보호하고자 한국산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도 분석 가능

- 개도국에 의한 조사개시가 136건으로 총 조사개시 건수의 66%를 차지
 -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연평균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6건에 불과한데 반해, 개도국은 이의 2.5배에 달하는 15.8건에 달함.
- 조사가 개시된 이후, **확정 조치(definitive measure)**가 부과된 것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17건을 제외한 총 189(= 206 - 17)건 중 117건 (62%)임.
 - 나머지 72건(38%)에 대해서는 no dumping, no injury, no causation, 제소 철회 등의 이유로 확정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사가 종료
- 1995~2004년의 기간 동안 조사가 개시되어 확정관세가 부과된 117건 가운데, 총 26건이 반덤핑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 5년의 부과기간이 만료, 이 중 9건 (34.6%)이 일몰재심 결과 부과기간이 연장되고, 나머지 17건은 종료됨.
 - 미국, 인도가 각각 3건, 남아공 2건, 중국 1건 등임.

II. 결 론

- 조사개시 요건 강화를 통해 근거가 약한 조사개시(frivolous initiation) 방지
- 개도국 반덤핑 절차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 증대 필요
 -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예비판정 강행규정화 등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몰재심을 통한 반덤핑 규제 기간 연장 제한

I. 1995~2004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가.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

- WTO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5.1.1~2004.6.30 기간 동안 한국 제품에 대해 총 194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중국(386건)이후 최다 조사개시 건수 기록

5大 피소¹⁾국 현황

국명	중국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조사가 개시된 건수	386	194	146	138	113

자료원 :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 WTO/DDA 규범 협상을 통한 현행 반덤핑 협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정부는 반덤핑 조사개시 이전부터 단계별로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대응 업계의 애로를 지원하는 수입규제 대책사업을 운영
 - 수입규제 조기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소 동향 파악(제소 前), 정부의견서 제출을 통한 조사개시 자제요청(제소 後), 재심 대응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적극 활용 등(확정판정 이후) 단계별 대응 전략 운영
 - 한편, 반덤핑 조치 남용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WTO DD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현행 반덤핑 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
 - 현행 반덤핑 협정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수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 일본 및 대만 등 반덤핑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와 반덤핑 프렌즈를 형성하여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DDA 규범 협상을 적극적으로 주도 하고 있음.

1) “피소”는 “제소가 된”의 뜻이 아닌 “조사개시(Initiation)된”의 의미로 사용. 제소가 되었을 지라도, 반덤핑 절차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당국이 근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제소를 기각할 경우 실제 조사가 개시되지 않아, WTO 반덤핑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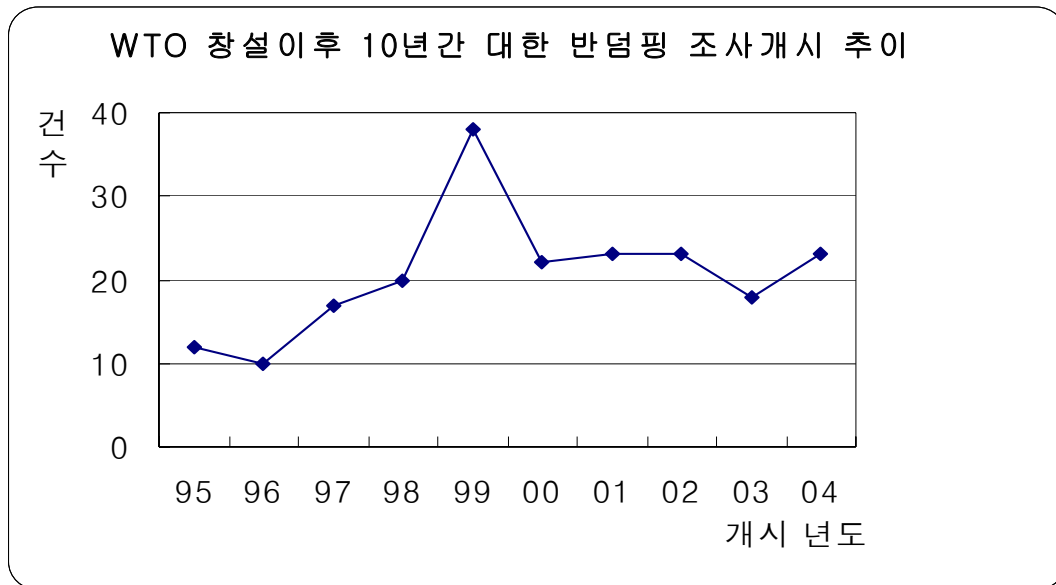
- 현재 반덤핑 프렌즈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이슈는 약 33개로 이중 핵심 이슈만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협상 모드로 전환할 필요성 대두
- 2004년 8월 1일 합의된 July Package에서 협상 시한을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로 정함에 따라, 현재 여타 협상 분야보다 진전 속도가 느린 규범 협상을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1995~2004 기간 동안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가 개시된 반덤핑 조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핵심적인 개정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목적임.

나. 조사 방법

- WTO 회원국이, WTO 반덤핑 위원회(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에 통보한 반기별 보고서(semi-annual report)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제품을 대상으로 개시된 반덤핑 조치만 선별 집계
- 현행 반덤핑 협정 16.4조에 의거, 모든 WTO 회원국은 반기별로 이전 반기에 취해진 반덤핑 조치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렇게 집계된 자료를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자료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각 회원국이 반덤핑 위원회에 통보시 누락된 건수를 보충
 - 품목 분류기준이 상이(예를 들어,타이어 제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버스용, 승용차용, 트럭용으로 구분)하여 회원국별로 반덤핑 위원회에 통보한 건수와, 무역관이 자체집계한 건수가 상이한 경우, 무역관 통계치를 사용
- 그러나 현재, 2004.7.1~12.31 기간 동안의 반기별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아 동 기간의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활용

다. 조사 결과

- WTO 창설 이후, 1995~2004년 동안 총 24개 회원국에 의해 206건의 對韓 반덤핑 조사 개시



자료원 :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해외 무역관 보유자료

주 : 동 자료는 조사개시 품목에 대한 집계기준 차이로 인해 WTO에 제출한 국별 semi-annual reports에 따라 집계한 WTO 통계치와 상이

- 1995~1999년 급증한 이후, 2000년 급감, 보합세를 나타내다가 2003년 소폭감소 한 후, 2004년 예년 수준으로 복귀
- 1998, 1999년도에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한 것은 IMF 사태로 인해 美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절하됨에 따라, 달러화 표시 수출가격이 낮아져 수출물량이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후 조사개시 건수가 급감한 것은 전 해에 개시된 반덤핑 조사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001, 2002년에는 연평균 23건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동 시기에 세계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반덤핑 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종의

“대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세이프가드 조치는 조사대상 품목이나 피소국 수 규모에서 반덤핑 조치보다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경우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유인이 적어짐.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1995~2004)

개시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 수	2	5	3	10	15	26	53	132	17	12

자료원 : The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4 (~'02),

WTO Safeguard Committee Annual Report 2003, 2004 ('03~)

주: '04년 자료는 1.1~10.18 기간 동안 이루어진 WTO 통보 건수 기준

- 2005년 3월 5일 현재 동기간 중 개시된 반덤핑 케이스 중, 조사 중인 것은 총 17건, 규제중인 것은 90건, 규제가 종료되거나 중간 철회된 것은 27건, 확정조치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 것은 72건임.
- 국별로는 인도가 29건으로 가장 많이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중국 25건, 미국 24건, EU 24건, 호주 18건, 남아공 13건 순임.

□ 개도국에 의한 조사개시가 136건으로 총 조사개시 건수의 66%를 차지

- 개도국의 반덤핑 법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개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 반덤핑 협정 18.5조에 의거, 1995년 10월 30일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19개 WTO 회원국만이 WTO 반덤핑 위원회에 자국내 반덤핑 법을 도입하였다고 통보하였으나, 2004년 10월 29일 현재 총 76개 회원국이 반덤핑 법 도입을 통보하였음.
- 대부분의 개도국이 수입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내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덤핑 조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

1995 ~ 2004 선진국 vs 개도국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선진국	5	3	5	9	18	6	7	4	5	8	70
개도국	7	7	12	11	20	16	16	19	13	15	136
총 개시건수	12	10	17	20	38	22	23	23	18	23	206

자료원 :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해외 무역관 보유자료

주 : 선진국은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5개국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국가는 모두 개도국으로 분류

- 위 표에서,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연평균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6건에 불과한데 반해, 개도국은 이의 2.5배에 달하는 15.8건에 달함.
- 앞으로도 개도국에 의한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WTO DDA 협상에서 미국 등이 반덤핑 조사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개도국도 WTO 반덤핑 협정과 합치된 자국내 반덤핑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EU 등의 선진국 등에 비해 제도 운용 절차의 투명성이 떨어짐.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개시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 48건, 섬유 28건, 전기/전자 21건 순으로 조사가 개시됨.

품목별 조사개시 현황

품목	철강	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계류	제지류	기타	합계
건 수(건)	48	79	28	21	5	9	16	206
비 중(%)	23.3	38.35	13.59	10.19	2.43	4.37	7.77	100

주1: 비중은 해당 품목 조사개시 건수/ 총 조사개시 건수(206건)

주2: 화학제품은 플라스틱, 고무류 포함

- 철강은 미국(13건), EU(8건)에서 가장 많이 조사가 개시되었고, 화학은 인도(19건), 중국 (18건), 섬유는 터키와 인도가 각각 (5건), 전기/전자는 EU (6건), 미국 (3건)에서 주로 對韓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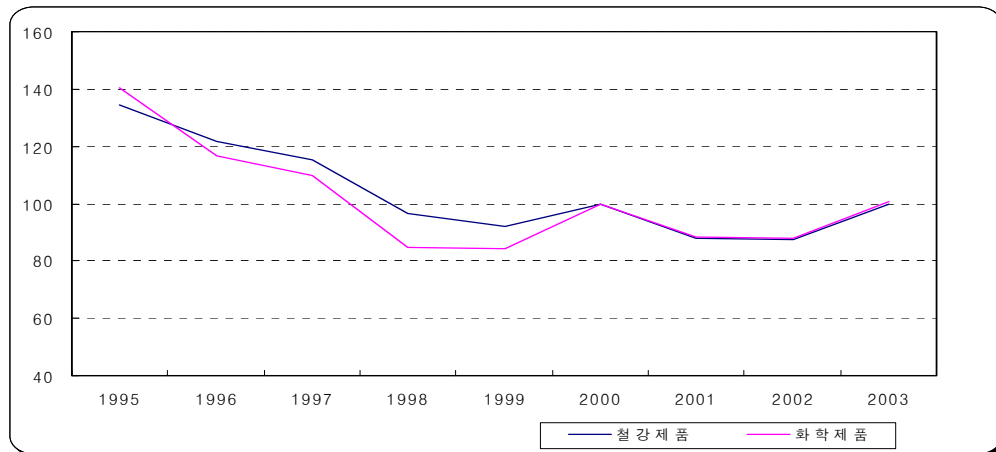
국별/품목별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1995~2004)

국 가	철 강	화 학	섬 유	전기/ 전자	기계류	제지류	기 타	합 계
E U	8	4	4	6	1	0	1	24
콜롬비아	0	2	1	0	0	0	0	3
베네수엘라	0	0	0	0	0	0	1	1
호주	5	8	0	2	1	2	0	18
뉴질랜드	0	0	1	2	3	0	0	6
말련	0	2	0	0	0	2	1	5
캐나다	5	0	0	0	0	0	1	6
대만	3	1	0	0	0	0	2	6
필리핀	1	1	0	0	0	0	0	2
페루	0	1	0	0	0	0	0	1
파키스탄	0	1	0	0	0	0	0	1
터키	0	1	5	0	0	0	0	6
태국	3	2	0	0	0	0	0	5
이집트	0	1	0	0	0	0	0	1
칠레	0	1	0	2	0	0	0	3
중국	2	18	1	1	0	3	0	25
일본	0	0	1	0	0	0	0	1
인니	2	2	2	0	0	2	1	9
인도	1	19	5	2	0	0	2	29
미국	13	5	1	3	0	0	2	24
남아공	2	6	1	1	0	0	3	13
브라질	1	2	1	0	0	0	0	4
멕시코	0	0	1	1	0	0	0	2
아르헨	2	2	4	1	0	0	2	11
합계	48	79	28	21	5	9	16	206

자료원 :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해외 무역관 보유자료

-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반덤핑 조사개시가 집중된 것은 (총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의 약 62%차지) 글로벌 경쟁 격화로 인해 수출단가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우리나라 철강 및 화학제품 수출단가 추이(1995~2004)



자료원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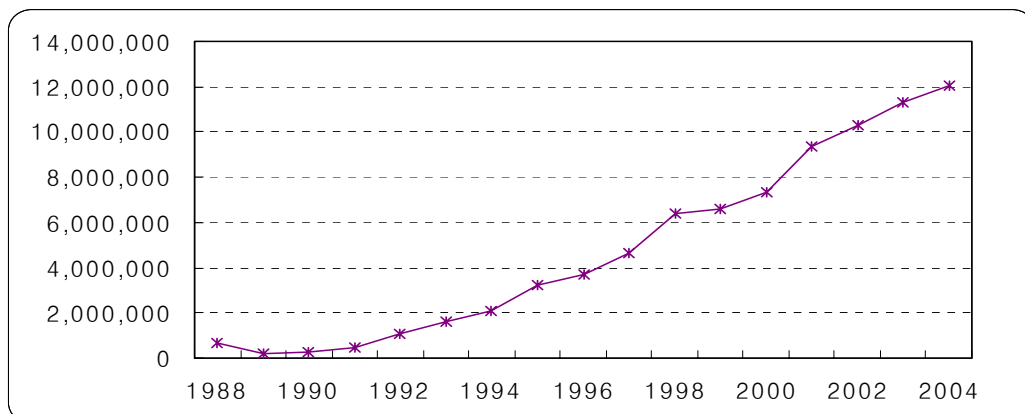
주1 : 2000년 수출단가를 100으로 기준

2 : 화학제품은 플라스틱/고무류 제외

- 수출물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일례로, 우리나라의 對中 화학제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증가

한국산 화학제품의 對中 수출물량

(단위 :Mt)



자료원 : KOTIS 통계

주 : MTI 기준 2(화학제품), 31(플라스틱류), 32(고무류)의 對中 수출물량 총합

- 또한, 최근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활발히 개시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주요 내수산업이 화학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보호하고자 한국산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도 분석 가능

화학제품 대상 반덤핑 조사개시 국가(2003년 기준)

활용국	조사개시 건수
인 도	38
중 국	18
미 국	16
멕시코	4
E C	3
인 니	3
파키스탄	2
터 키	2
브라질	1
캐나다	1
페 루	1
필리핀	1
태 국	1
트리니다드 & 토바고	1
합 계	92

자료원 : The Global Protection Report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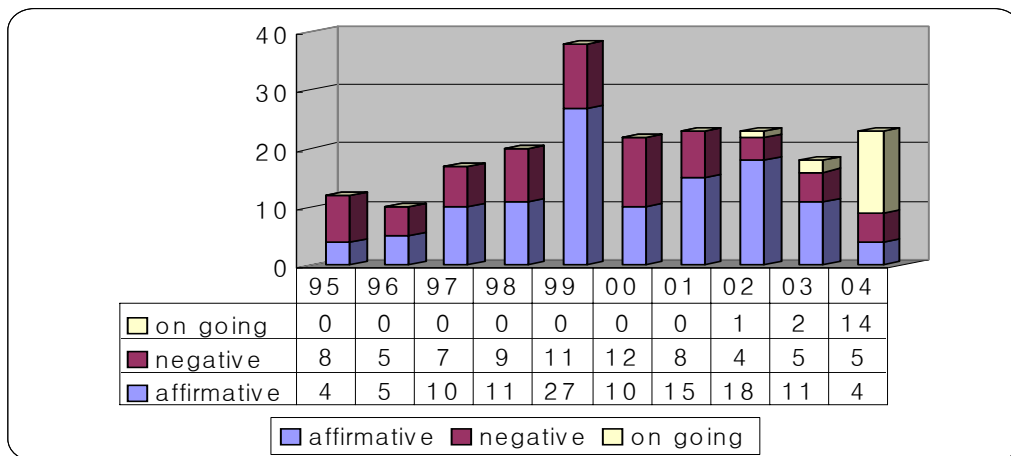
- 한편, 철강제품은 2004년 초 촉발된 세계적인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높은 수요에 힘입어 최근 조사개시된 건수는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철강산업 경기가 변동할 시에는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하여 철강이 근간산업인 국가를 중심으로 언제라도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음.

- 조사가 개시된 이후, **확정 조치(definitive measure)**가 부과된 것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17건을 제외한 총 189(= 206 - 17)건 중 117건(62%)임.
- 나머지 72건(38%)에 대해서는 no dumping, no injury, no causation, 제소 철회 등의 이유로 확정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사가 종료된 바,

- 조사 개시 이후 우리 수출에 대한 조사개시 효과(chilling effect)를 고려할 경우, 조사 개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반덤핑 조사 남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WTO DDA 규범 협상시 반덤핑 Friends²⁾는 불필요한 조사개시 제한을 목적으로 조사개시 요건 강화를 제안 (TN/RL/GEN/23)³⁾

1995-2004년 동안 확정관세 부과



자료원 :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해외 무역관 보유자료

- 2005년 3월 5일 현재 일몰재심⁴⁾이 진행 중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1995~2004년의 기간 동안 조사가 개시되어 확정관세가 부과된 117건 가운데, 총 26건이 반덤핑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 5년의 부과기간이 만료되었는 바, 이 중 9건(34.6%)이 일몰재심 결과 부과기간이 연장되고, 나머지 17건은 종료됨.

- 미국, 인도가 각각 3건, 남아공 2건, 중국 1건 등임.

* 참고 : 2005년 3월 5일 현재 발효 중인 반덤핑 조치 중, 95년 이전에 조사가 개시된 후 확정관세가 부과되어 현재까지 부과기한이 연장된 건수는 미국 8건, 캐나다 1건, EU 2건, 멕시코 1건, 호주 1건 등 총 13건에 달함.

2) 일본, 한국, 브라질, 홍콩, 대만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당국의 재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 반덤핑 협정 개정을 추진

3) 첨부문서 2 참조

4) UR협상 결과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에서 조사당국이 재심을 통해 덤핑, 보조금 수입에 의한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의 계속적인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관세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부과가 종결된다는 조항

국별 세부 내역

연번	국 가	품 목	조사개시	원심 확정관세	규제종료 여부
1	EU	스텐레스 스틸 웨스너	96.12.7	98. 2월 24~26.7%의 확정관세	2003.2.19 종료
2	호주	폴리스티렌 레진	97.12.11	98.12.24일 가격수락	2003.12월 종료
3	말련	PVC 바닥재	95.9.19	96.2.17 확정관세	2001.3.16 종료
4		골심지	97.11.4	98.4.3 대립35.4%, 경산17.3% 확정관세	2003.4.2 종료
5	중국	신문용지	97.11.10	99.6.3 55~78%확정관세	2004.6.30 일몰 재심결과 연장
6	미국	stainless still wire rod	97.8.26	98.7.29 3.07% 확정관세	2004.9.13 일몰 재심결과 연장
7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98.4.28	99.3.31 16.26%확정관세	2004.10.21 일몰 재심결과 연장
8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98.7.13	99.6.8 12.12~58.79% 확정관세	2004.12.10 일몰 재심결과 연장
9	캐나다	스테인레스 봉강	98.12.3	99.6.18 확정관세 부과	2005.1.18일 종료
10		철근	99.6.16	00.2.12 확정관세 부과	2005.1.11일 종료
11	대만	H형강	96.7.23	98.12.14 31.48% 확정 관세 부과	2004.6.14일 종료
12		Uncoated Stress-relieved steel wires for pre- tressed concrete	97.8.14	98.12.14	2004.12.14일 종료
13	태국	H형강	97.4.25	98.4.15 31.65~44.70% 확정관세	2003.12.2 종료

연번	국 가	품 목	조사개시	원심 확정관세	규제종료 여부
14	인도	NBR	96.3.15	97.7.17 확정관세	2002.9.21 일몰 재심결과 연장
15		아크릴단섬유	96.9.13	97.10.14 확정관세	2002.8.6 일몰 재심결과 연장
16		PTA	96.12.20	98.3.19 확정관세	2002.5.22 종료
17		폴리스티렌	97.9.16	98.9.14 확정관세	2002.5.22 종료
18		SBR	98.4.7	99.6.2 확정관세	2004.7.26 일몰 재심결과 연장
19	남아공	스테인레스 주방용기	97.11.2	98.10.21 확정관세	2004.9.26 일몰 재심결과 연장
20		자동차 타이어	97.1.24	98.9.18 확정관세	2003.12.19 종료
21		스테인레스 용접관	98.7.31	98.6.18 확정관세	2004 일몰재심 결과 연장
22		담요	98.4.28	99.6.18 확정관세	2004.6.18 종료
23		스테인레스 싱크대	98.9.4	99.12.17 확정관세	2005.1.14 종료
24		과산화수소	99.5.28	00.3.3 확정관세	2005.3.3 종료
25	아르헨	세탁기용 전동기	95.12.5	98.1.20 3년간 확정	2001.1.27 종료
26		폴리에스터 섬유	99.6.22	00.6.21 수출최저가 적용	2003.6.3 종료

주 : 색칠된 부분은 일몰재심 결과 부과기간이 연장된 반덤핑 조치임.

- WTO/DDA 규범 협상에서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 조치의 총 부과기간이 5년을 넘지 않도록 강행 규정화할 필요성 증대
- 세이프가드 협정의 “4+4”원칙에 착안하여, 총 반덤핑 부과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는 “5+5”원칙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하나, 세이프가드 협정이 공정 무역에 대한 규제임에 반해 반덤핑 협정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논리 개발 필요)

5) 일몰재심에 대한 반덤핑 프렌즈 제안서는 첨부문서 3 참조

II. 결 론

□ 조사개시 요건 강화를 통해 근거가 약한 조사개시(frivolous initiation) 방지

- 조사개시 효과(chilling effect)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덤핑 조사개시가 오더 수주와 직결되고, 수출자에게 있어서는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는 데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큼.

- 중국의 광섬유의 경우 2003.7.1일 조사가 개시되어, 2005.1.1일 최종판정이 공고되었는데, 조사개시~최종판정일 이전 기간 동안 수출 감소액 현저

한국산 광섬유 對中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
수출액(증감율)	15(596.6)	20(32.2)	18(-9.7)	11(-34.8)

자료원: KOTIS 통계(HS 900110 기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2004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품을 상대로 개시된 206건의 반덤핑 케이스 중 확정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 조치가 72건에 달해,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조사개시 요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 반덤핑 절차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 증대 필요

-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절차적 투명성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 개도국의 반덤핑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 2000년 이후 개도국의 연평균 對韓 반덤핑 조사 개시건수는 선진국의 2.5배에 달하는 15.8건을 기록

- 따라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예비판정 강행규정화 등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몰재심을 통한 반덤핑 규제 기간 연장 제한

- 조사 결과 1995~2004 기간 동안 조사 개시되어 확정관세가 부과된 117건 가운데, 부과기간 5년(혹은 3년)이 만료된 케이스는 26 건에 달하는 바, 이 중 9건이 일몰재심에 의해 부과기간이 연장되어, 우리 수출업체에 부담 가중
- 따라서, 일몰재심을 통한 반덤핑 규제 기간 연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큼.

첨부 1: 국별 AD 조사개시 내역(1995~2004)

[미 국]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5	1	POLYVINYL ALCOHOL	4.4	○ 최종판정일 :2000 9.7 - 무역위원회 부정적 예비판정	조사종결
1996	1	COLLATED ROOFING NAILS	12.20		조사종결
1997	1	STATIC RANDOM ACCESS MEMORY	3.21		조사종결
	2	STAT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3.21		조사종결
	3	STAINLESS STEEL WIRE ROD	8.26	○ 최종판정일 : 1998 7.29 ○ 규제 기간 : 1998 9.15 부터 관세 부과 ○ 고려상사: 3.07% 기타마진율 : 3.07%	2004 8.13 부로 지속
1998	1	EMULSION STYRENE B U T A D I E N E RUBBER	4.27	무역위원회 부정적 최종 판결	조사종결
	2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4.28	○ 최종판정일자:1999 3.31 ○ 규제 기간 : 1999 5.21 ○ 포항제철: 16.26% 기타: 16.26%	규제중
	3	STAINLESS STEEL ROUND WIRE	5.12	○ 최종판정일자:1999 4.9 ○ 상무부 부정적 판정	관세 부과 없음
	4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7.13	○ 최종판정일 : 1999 6.8 ○ 규제 기간 : 1999 7.27 ○ 포항제철: 12.12%, 인 천 제 철 : 0.00% , 대한전선: 58.79%, 기타마진율 : 12.12%	규제중 (2004.12.10 일몰재심 결과 연장)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9	1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3.16	○ 최종판정일:1999 12.29 ○ 규제 기간 : 2000 2.10 ○ 포항제철: 0.05% 동국제강: 2.98% 기타: 2.98%	규제중 (2005.1.3 일몰재심 개시)
	2	APERTUR MASKS	3.22	○ 최종판정일 :1999.3.22 ○ 무역위원회 부정적 최종 판결	조사종결
	3	POLYESTER STAPLE FIBER, CERTAIN	4.1	○ 최종판정일:2000 3.30 ○ 삼양: 0.14% 삼영: 7.96% 금풍: 14.10% 기타: 11.38%	규제중
	4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6.23	○ 최종판정일:1999 6.23 ○ 무역위원회 부정적 최 종 판결	조사종결
	5	STRUCTURAL STEEL BEAMS	8.3	○ 최종판정일 :2000 7.5 ○ 강원: 49.01% 기타: 37.25 %	규제중
	6	E X P A N D A B L E P O L Y S T Y R E N E RESINS, CERTAIN	12.20	○ 최종판정일:2000 11.16 ○ 상무부 부정적 판정	조사종결
2000	1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6.20	○ 최종판정일 : 2001 6.22 ○ 규제 기간 : 2001 9.7 일부부터 관세 부과 ○ 동국제강, 한국제철: 22.89%, 한보철강: 102.28% 기타: 22.89%	규제중
	2	DESKTOP NOTE COUNTERS AND SCANNERS	8.11	○ 최종판정일 :2000 9.7 ○ 무역위원회 부정적 예비판정	조사종결
	3	STAINLESS STEEL ANGLE	9.14	○ 최종판정일 :2001 3.23 ○ 규제 기간 : 2001 5.18 관세부과 ○ 배명: 99.56% SK Global:99.56% 기타: 40.21%	규제중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2	1	POLYVINYL ALCOHOL	10.01	○ 최종판정일 : 2003 8.11 ○ 규제 기간 : 2003 10.1 관세부과 ○ DC 화학: 38.74% 기타: 32.08%	규제중
2003	1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D STRAND	2.27	○ 최종판정일 : 2003 12.8 ○ 규제 기간 : 2004 1.28 관세부과 ○ 고려: 54.19% 동일: 54.19% 기타: 35.64%	규제중
	2	THERMAL TRANSFER RIBBONS	6.27	○ 2004 4.05 상무성 부정적 최종 판결	조사종결
2004	1	CERTAIN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3.30	○ 2005.2.1 조사청원 철회로 조사종결	조사종결

[캐나다]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5	1	정제당	3.17	○ 최종판정일: 1995.11.6 ○ 판정결과 : 무피해	조사종결
1998	1	스테인레스 봉강	12.3	○ 최종판정일: 1999. 6.18 ○ 규제 기간 : 별도 공고 시까지	2005년 1.18일부로 규 제 종료
1999	1	철근	6.16	○ 최종판정일: 2000.1.12 ○ 규제 기간 : 별도 공고 시까지	2005.1.11일부로 규제 종료
2001	1	냉연강판	3.12	○ 최종판정일 : 2001.10.9 ○ 판정결과 : 무피해	조사종결
2003	1	구조용 강판	5.21	○ 최종판정일 : 2003.11.17	규제중(수출가 + 89%)
	2	스테인레스 강선	11.21	○ 최종판정일 : 2004.7.30	규제중(수출가 + 181%)

[E U]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5	1	비디오카테스레코더 와 부품	4.25	96.4월 제소자 제소 철회 로 조사 종료	조사종결
	2	PET 비디오필름	6.14	96.7월 제소자 제소 철회 로 조사 종료	조사종결
	3	굴삭 (Hydraulic Excavators(6톤 초과)	5.11	96.11월 제소자 제소 철회 로 조사 종료	조사종결
1996	1	스텐레스스틸 웨스너	12.7	98.2월 24-26.7%의 확정 관세를 부과했으나 03.2.21일 부과종료	규제종료(03.2.19)
1997	1	팩시밀리 (Fax machine)	2.1	. 98.4월 확정관세 부과 (대우통신 11.6%, 대일 미디어 9.2%, 삼성전자 17.4%, Nixxo 통신 7.5%, 기타업체 25.1%) . 01.4월 제소자인 필립 스사가 역내 팩시밀리 생산을 전면 중단할 의 사를 집행위에 밝힘에 따라 팩시밀리 역내생산 이 전무한 상황에서 반 덤핑관세 폐지 결정	규제종료(2003.2.19)
	2	Synthetic Fibre ropes	7.31	미소마진으로 98.10월 조사 종료	조사종료
	3	Laser optical reading systems(카라디오 및 CE Tuner)	10.25	피해 인과관계 미흡으로 조사 종료(98.12)	조사종료
1998	1	Steel stranded ropes & cables	5.2	99.8월 미소마진으로 조 사 종료	조사종료
	2	스텐레스스틸 와이어 (1mm 미만)	6.25	덤핑마진 미소로 인해 99.7월 조사 종료	조사종료
	3	스텐레스스틸 와이어 (1mm 이상)	6.25	덤핑마진 미소로 인해 99.7월 조사 종료	조사종료
	4	폴리에스터 textured 필라멘트사(PYT)	8.21	99.4.28일 제소자가 제소 를 철회함에 따라 99.6월 조사 종료	조사종료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9	1	Video Tapes on reels	3.11	99.10.6일 제소자가 제소를 철회함에 따라 99.11월 조사 종료	조사종결
	2	주철제관연결구류	5.29	00.8월 확정관세 부과(영화금속 13.4%, 기타 23.4%)	지속(2005.8.19 재심요청 없을시 종료예정)
	3	칼라TV 브라운관	7.29	00.10월 19.7% 확정관세 부과	규제중
	4	헤어브러쉬	8.13	확정관세 부과시 조사개시후 15개월내 결정되어야 하는데, 동 기한내 아무런 조치가없었으므로 00.11.13일 최대조사기간이 지나 조사가 자동종료	조사종결(00.11.13)
	5	전자저울	9.16	00.11월 확정관세 부과(CAS는 무세, 기타 업체 4.9%)	규제중
	6	폴리에스터 스테이블 파이버(PSF : 단섬유)	10.7	00.12월 확정관세 부과 후 03.12월 중간재심 실시해 04.12월 확정관세 재부과(성림 0%, 휴비스 5.7%, 새한인더스트리 10.6%, 동우, 이스트영, 경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기타 업체 10.6%)	규제중
	7	PET	11.6	00.11월 확정관세 부과하였으며 이후 03.5월 중간재심을 개시, 04.11월 확정관세율 재조정(톤당 유로) : 호남 101.4, 동국 148.3, 대한 0, SK 케미컬 0, KP 케미컬 0, 기타 업체 148.3	규제중
2000	1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5.5	2001.7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 종료	조사종결(2001.7.27)
	2	PET 필름	5.27	01.8월 확정관세 부과(HS 인더스트리, 효성, 고합 7.5%, 코오롱, 도레이 새한 0%, SK 케미칼 7.5%, 기타 업체 13.4%)	규제중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4	1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장섬유 강력사)	1.28	2005.2.2 미소마진으로 종결	조사종결
	2	합성고무	5.28	2005.3월 미소마진으로 조사 사실상 종결	조사종결
	3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11.2		조사중

[터 키]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8	1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HS Code: 5402.43)	1. 27	○최종판정일: 1999. 12. 6 ○규제 기간: 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간 ○한국합섬: 0% (주)효성: 7.0% 삼양사, 대하합섬, 새한, 코오롱, SK케미칼: 12.5% 대한화섬: 17.9% 기타 한국업체: 21.2%	만료(2004년 11월)후 재조사 진행 중
1999	1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HS Code: 5503.20)	3. 4	○최종판정일: 2000. 3. 13 ○규제 기간: 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간 ○새한, SK케미칼: 11.9%, 기타 한국업체: 24.6%	규제중
	2	폴리에스테르 직조섬유사 (HS Code: 5402.33)	3.4	○최종판정일: 2000. 6. 28 ○규제 기간: 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간 ○한국업체 전체: 33.7%	규제중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9	3	폴리에스터 장섬유직 물 (HS Code: 5407 일 부)	11. 1	○최종판정일: 2002. 2. 15 ○규제 기간: 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간 ○위드: 3.51% 창운: 4.96% 성안: 7.07% 대광, 동흥, 동성, 덕동, 현마, 승우, 서광, 서광 무역, 성광, 언문, 울화 : 14.64% 기타 한국업체: 40.0%	규제중
2004	1	금속드리사	2. 7	○최종판정일: 2004. 9. 24 ○규제 기간: 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간 ○한국업체 전체: US\$ 2.2 / kg	규제중
	2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 (HS Code: 3907.60.20)	12. 9		조사중

[멕시코]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9	1	폴리에스터 합성필라멘트 (HS CODE 5502.33.01)	12.22	○최종판정일: 2001. 6. 22 ○규제 기간: 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간 ○전수출업체에 16.03%	규제중 (2006년 6월 22일까지 지속)
2000	1	냉장고	9.11	○최종판정일: 2002.3.8 ○2000년 부터 조사 후, 덤핑협회가 없는 것으 로 최종 판정	2002-03-08일 조사종결

[아르헨티나]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5	1	세탁기용 전동기 Hs Code: 8501.40.19	12. 5	○최종판정일: 1998. 1. 20 ○당초 덤핑 혐의율: 26.6%~30.6% ○규제방식: 수출 최저가 (FOB U\$14/ 개) ○규제기간: 3년	규제종료 (2001년 1월 27일)
1997	1	게맛살(Hs Code: 1604.20.90, 1605.10.00)	1. 7	○최종판정일: 1998. 8. 27 ○한국 무혐의 판정	조사종결
1998	1	폴리에스터 섬유 Hs Code: 5407.42.00 5407.52.10	6. 22	○최종판정일: 2000. 6. 21 ○당초 한국산 제품 덤핑 혐의율: - Hs Code 5407.42.00: 97.78%, - Hs Code 5407.52.10: 146.07% ○규제방식: 수출 최저가 (FOB U\$ 9.5 / kg) ○규제기간: 3년	규제종료 (2003년 6월 3일)
1999	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 물 Hs Code: 5408.22.00	12. 2	○최종판정일: 2001. 5. 31 ○당초 한국산 덤핑혐의율: 14.47%~39% ○규제방식: 수출 최저가 (FOB U\$ 8.73 / kg) ○규제기간: 5년	규제중 (2006년 6월 만기)
2000	1	폴리에틸렌 Hs Code: 3901.10.10 3901.10.91 3901.10.92 3901.20.19 3901.20.29	2. 15	○최종판정일: 2000. 7.27 ○조사 절차상 요건 미 충족으로 규제조치없 이 조사 종료.	조사종결
2001	1	합성스테이플섬유 Hs Code: 5503.20.00	5. 21	○최종판정일: 2002. 11.12 ○당초 한국제품 덤핑 혐의율: 13.33% ○규제방식: 수출 최저가 (FOB U\$ 0.85/kg) ○규제기간: 3년	규제중 (2005년 11월 16일 만기)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1	2	일회용 주사기 (Hs Code 9018.31.11, 9018.31.19)	6. 4	○ 최종판정일: 2002. 12. 4 ○ 20cc주사기만 덤핑 혐의율이 8.01%로 책 정되었으나 최종 무혐 의 판정	조사종결
	3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Hs Code:7209.16.00, 7209.17.00,7209.18.00, 7209.25.00,7209.26.00 7209.27.00,7209.28.00 7209.90.00,7211.23.00 7225.50.00,7226.92.00)	7. 19	○ 최종판정일: 2003. 1. 8 ○ 규제내용: 한국제품에 60.46% 증가세 부과 ○ 규제기간 : 5년	규제중 (2008년 12월 1일 만기)
2002	1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Hs Code:7210.49.10 7210.61.00,7212.30.00 7212.50.00,7225.92.00 7225.99.00,7226.94.00 7226.99.00)	5. 30	○ 최종판정일: 2003. 5. 23 ○ 규제내용: 한국제품에 49.67% 증가세 부과 ○ 규제기간 : 5년	규제중 (2008년 5월 만기)
2004	1	합성필라멘트사 폴리 에스터 직물(Hs Code: 5407.42.00,5407.52.10 5407.61.00,5407.69.00)	2004년 2월 23일 2004.9.27 (조사 연장 조치)	예비판정없이 현재까지 조사 진행중	조사중
	2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PET) Hs Code:3907.60.00	12. 22	조사 진행중 한국 제품 덤핑 혐의율: 11.14%	조사중

[브라질]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9	1	나일론 6번사	1월	○ 최종판정일 : 2001.6.28 ○ 규제기간 : 최종 판정 일로 부터 향후 5년간 ○ 반덤핑 판정결과 - 5.2%(태광산업) - 52.2%(기타 업체)	규제중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0	1	스텐레스강관	6월	○ 최종판정일 : 2001.5.31 ○ 반덤핑 판정결과 - 무협의 처리	조사종결
2001	1	PVC레진	11. 20	○ 최종판정일 : 2002.11월 ○ 반덤핑 판정결과 - 무협의 처리	조사종결
2004	1	PET레진	3월	○ 최종판정일 : 2004.7.7 ○ 반덤핑판정결과 - 미소물량에 따른 무협의 처리	조사종결

[폐 루]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5	1	타이어	5. 31	○ 최종판정일 : 1996. 5.3 ○ 판정결과: no dumping	조사종결

[칠 레]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0	1	발포성의 스티렌 expandable polystyrene (HS 39031100)	6. 12	○ 최종판정일:2001.3.5 ○ 판정결과: no dumping, no injury	조사종결
	2	세탁기(HS 84181000/ 84182100)	10. 21	○ 최종판정일:2001.3.5 ○ 판정결과:no dumping, no injury	조사종결
	3	냉장고(HS84501100)	10. 21	○ 최종판정일:2001.3.5 ○ 판정결과:no dumping, no injury	조사종결

[콜롬비아]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5	1	타이어 (내부)	12.29	○ 최종판정일: 1996.08.23 ○ 판정결과: 무혐의	조사종결
1998	2	타이어(외부)	10.14	○ 최종판정일: 1999.05.25 ○ 판정결과: 무혐의	조사종결
2001	3	폴리에스터섬유	10.11	○ 최종판정일: 2002.01.18 ○ 판정결과: 무혐의	조사종결

[베네수엘라]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7	1	1회용 주사기	12.4	○ 최종판정일: 1999.5.13 ○ 판정결과: 무혐의	조사종결

[인도네시아]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6	1	synthetic fibre	11.7	○ 최종판정일: 1997. 7. 25 ○ 판정결과: no dumping no injury	조사종결
1998	1	tin plate	3. 24	○ 최종판정일: 1999. 4.30 ○ 판정결과: 호주 16.7%, 대만 41%, 일본 68%, 한국 4~6.5%	규제종료일 이전 종료
1999	1	카본블랙	12. 3	○ 최종판정일: 2004.9.6 ○ 규제 기간: 최종판정 일로 부터 향후 5년간 ○ 판정결과: 동양제철 화학: 10%, CCK: 7%, KCB: 9%, 기타: 10%	규제중
2000	1	steel pipes	9.13	○ 최종판정일: 2001.3.12 ○ 제소측 case withdrawn	조사종결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1	1	ferro mangan and silicon mangan	5.14	○ 최종판정일 : 2003.1.28 ○ 제소측 case withdrawn	조사종결
2002	1	무수푸틸산	4.22	○ 최종판정 대기중	조사중
2003	1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2.10	○ 최종판정일 : 2004.11.11 ○ 규제 기간 : 최종판정 일로 부터 향후 4년간 ○ 한국기업 전체 : 59.64%	규제중
	2	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2.10	○ 조사결과 덤핑무혐의 로 잠정결론(2004.7.12)	조사중
	3	PSF(Polyester Staple Fibre)	6.27	○ 최종판정일:2004.10월 ○ 판정결과: 덤핑과 산업피해간 인관관계 가 없다고 판정	조사종결

[말레이시아]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5	1	PVC바닥재	9. 19	○ 최종판정일 : 1996. 3.17 ○ 반덤핑관세 : 69%	규제종료 (2001. 3.16)
1997	1	콜심지	11. 4	○ 최종판정일 : 1998. 4. 3 ○ 반덤핑관세 : 대립 (35.4%), 경산(17.3%)	종료 (2003. 4. 2)
2002	1	카본블랙	1. 10	○ 최종판정일:2002. 10. 10 ○ 판정결과 : 무혐의	조사종결
2003	1	인쇄용지	1. 16	○ 최종판정일: 2003. 9. 26 ○ 규제기간 : 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간 ○ 반덤핑관세: 43.24%	규제중
2004	1	무수말레산	6. 10	○ 최종판정일 : 2005.2.3 ○ 반덤핑관세 : 26.34%	규제중

[필리핀]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7	1	주석도금강판 (electrolytic tinplates)	4.17	○ 97.7.9일 잠정판정이 후 조사가 종결된 것 으로 추정됨. (WTO 통보문서)	조사종결
1999	1	PP Resin	8.16.	○ 최종판정일: 2000.8.30. ○ 규제 기간: 최종판 정일로 부터 5년간 ○ 업체별로 품목(PP Grade)에 따라 수출 가격의 2.09~39.42% 까지 부과	2001.11.20 조치 철회

[인도]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6	1	NBR(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3.15	○ 최종판정: 1997.07.17 ○ 일몰재심: 2002.09.21 ○ 중간재심: 2004.03.29 ○ AD마진금호 10.27% 현대47.08%, 기타49.06%	규제중
	2	아크릴 단섬유(Acrylic Fibre, both in shrinkable and non-shrinkable form)	9.13	○ 최종판정: 1997.10.14 ○ 일몰재심: 2002.08.06 ○ AD 마진: 83.50%	규제중
	3	PTA(Pure Terephthalic acid)	12.20	○ 최종판정: 1998.03.19 ○ 중간재심: 2000.05.29 ○ AD 마진: 삼성 14.5%, 기타 26.76%	일몰재심(2002.05.22) 결과 종료
1997	1	폴리스티렌 (Polystyrene)	9.16	○ 최종판정: 1998.09.14 ○ 일몰재심: 2004.06.08 ○ AD 마진: 취소	일몰재심 결과 종료
1998	1	봉제바늘(Industrial Sewing Machine Needles)	1.16	○ 최종판정: 1999.04.13 ○ 판정결과: 무혐의	조사종결
	2	Styrene Butdiene Rubber (SBR)	4.7	○ 최종판정: 1999.06.02 ○ 중간재심: 2001.07.03 ○ AD 마진: \$204/Ton	규제중(2004.7.26일몰 재심 결과 연장)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9	1	Ethylene Propylene Diene Rubber (EPDM)	8.27	○ 최종판정: 2000.08.21 ○ 중간재심: 2003.12.22 ○ AD 마진: 금호 9.54%, 기타 18.35%	규제중
	2	나일론 타이어코드 (Nylon Tyre Cord Fibre : NTCF)	2.26	○ 최종판정: 2000.02.22 ○ AD 마진: 효성 38.64%, 기타 54.28%	중간재심(2003.04.30) 결과 종료
	3	광섬유(Optical Fibre)	7.1	○ 최종판정: 2000.06.14 ○ AD 마진: 대우 71.45%, LG케이블 77.22%, 대한 전선 13.75%, 삼성전자 14.11%, 기타 77.22%	규제중
	4	옥소 알코올(Oxo Alcohols)	7.29	○ 최종판정: 2000.07.17 ○ AD 마진: NBA 106.73%, 1BA 140.19%, 2EHA 109.05% ○ 중간재심: 2004.02.26	중간재심으로 취소
	5	소듐 시아나이드 (Sodium Cyanide)	3.8	○ 최종판정: 2000.03.06 ○ AD 마진: 87.80% ○ 일몰재심 개시(2004.03.29)	규제중
	6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단섬유(PSF)	1.25	○ 최종판정: 2000.01.21 ○ AD 마진: 46,215~46,607 루피/PMT과 실제 수 입제품의 인도 도착 가격(PMT당)과의 차 이를 AD 마진으로 산정	재무부에서 반덤핑관 세 미부과(자체 종결)
2000	1	폴리에스터 필름(POLY- ETHYLENE TEREPHTHALATE FILM POLYESTER FILM)	3.29	○ 최종판정: 2001.05.10 ○ AD 마진: U\$0.982/KG	규제중
2001	1	LLAB(Lead Acid Batteries)	1.12	○ 최종판정: 2001.12.07 ○ AD 마진: U\$1.9043.930/kg 과 수입품의 도착가 격과의 차액	규제중. (상공부 반덤핑국 (DGAD)이 재무부에 반덤핑 철회를 권고 (04.11.8), 재무부 검토중)
	2	Partially Oriented Yarn (POY)	8.20	○ 최종판정: 2002.08.16 ○ AD 마진: 77.86%	규제중
	3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단섬유(PSF)	6.25	○ 최종판정: 2002.12.24 ○ AD 마진: 새한 5.53%, 기타 44.7%	수요업계의 요구로 중 간재심후 종결(2004.10.13)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1	4	Poly-Iso Butylene (PIB)	9.12	○ 최종판정: 2002.12.31 ○ AD마진 U\$1037.77/톤	규제중
2002	1	가성소다(Caustic Soda)	5.14	○ 최종판정: 2003.9월 ○ AD 마진:톤당 \$295.27 과 수입품의 도착가 격과의 차액	규제중
	2	Copper Clad Laminates	12.24	○ 최종판정: 2003.12.23 ○ AD 마진:취소	조사종결
	3	스틸 롤(Induction Hardened Forged Steel Rolls)	8.27	○ 최종판정: 2003.07.02 ○ AD 마진: 11.06%	규제중
	4	포타슘 카보네이트 (Potassium Carbonate)	12.19	○ 최종판정: 2004.01.16 ○ AD 마진: 톤당 \$9.45-123.86	규제중
	5	소듐 아황산염 (Sodium Hydrosulphite)	11.14	○ 최종판정: 2003.10.02 ○ AD 마진: 98.01%	규제중
2003	1	메틸 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2.19	○ 최종판정: 2004.08.18 ○ AD 마진:SFC 및 삼성 19.91%, 기타 11.83%	규제중
	2	PVC 레진(PVC Paste Resin)	8.29	○ 최종판정: 2004.08.20 ○ AD 마진:한화 1.69%, LG케미컬 0.98%으 로 나타나 미소마진 으로 조사종결	조사종결
	3	톨루엔(Toluene Di-Isocyanate)	10.20	○ 최종판정: 2005.1.19 ○ 판정결과: 무혐의	조사종결
	4	폴리올(Flexible Slabstock Polyol)	5.21	○ 잠정관세:2003.12.21 ○ AD 마진:U\$1463.71/톤	규제중
	5	프로필렌 글리콜 (Propylene Glycol)	8.22	○ 최종판정:2004.8.20 ○ AD 마진:46.87%	규제중
	6	Poly Vinyl Chloride Resin (Emulsion grade)	8.22	○ 조사결과 한국무혐의 판정(2004.10.7)	조사종결
2004	1	구연산(Citric Acid)	8.27	-	조사중

[태 국]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7	1	H형강	4.25	○최종판정일:1998.4.15 ○판정 결과 : 최종판정 일 로 부 터 향 후 31.65%~44.70%의 반덤핑 관세 부과	2003년 12. 2일부로 규제 종료
2002	1	프탈산 무수물	2.15	○ 최종판정일 : 2003.8.6 ○ 판정 결과 :AD관세 부과 요청 기각	2003년 8. 6일부 기각
	2	열연강판	7.5	○최종판정일:2003. 6. 13 ○규제 기간 : 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간 ○유예기간 : 6개월 (2004.3.20부터 2004.9.19까지) ○AD관세율 : 13.96%	규제중
	3	스텐레스압연강판 (냉간압연품)	2.15	○최종판정일 : 2003. 3. 10 ○AD관세율재조정(51.54→ 50.99%) ○규제 기간 : 2003.3.12 부터 5년간	규제중
2004	1	아질산염	6.23	-	조사중

[파키스탄]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4	1	PVC RESIN (HS CODE: 3904.1000)	6.24	○ 최종판정일:2005.2.24 ○ 판정 결과 : 한국산 40.18% ○규제기간:5년 '04.10.26 ~'09.10.25	규제중

[호 주]

조사 개시 년도	연 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6	1	PVC	1. 5	○ 최종판정 :1997.2.19 ○ 판정결과 : 무피해	조사종결
1997	1	certain coated wood free paper sheets	7.9	○ 최종판정일:1998.9. 16 ○ 판정결과 : 한국산 제외 (no dumping)	조사종결
	2	폴리스티렌 레진	12.11	○ 최종판정일:1998.12.24 ○ 판정결과 : 덤프관세 부과(p/u)	○ 규제 종료 : 2003. 12 월 (만기종료)
1999	1	고강도 볼트 (Bolt)	10. 8	○ 2000.3월 제소업체 소송을 취하	조사종결
	2	트리에타놀라민 (Triethanolamine)	7. 1	○ 1999.8월, 제소업체 가 한국산에 대한 제소를 취하	조사종결
	3	LLDPE	2. 16	○ 최종판정일: 2000.7. 26 ○ 판정결과: 무혐의	조사종결
	4	PVC 레진	4월	○ 최종판정일:2000.3.17 ○ 규제 기간: 최종판 정일로부터 향후 5 년간(9~34%)	규제중 (종료예정일 2005.3.17)
2000	1	동관 (Copper Tube)	10.19	○ 최종판정일:2001.4.19 ○ 판정결과 : 덤프관세 부과 (능원금속은 가격 수락) ○ 규제 기간 : 최종판 정일로부터 향후 5년	규제중 (종료예정일 2006.4.19) ○ 호주 제소업체 요청 으로 재심이 실시되고, 2004.10.12일자로 새 로운 덤프세율이 적용
2001	1	폴리올 (Polyols)	4. 26	○ 최종판정일:2002.4.24 ○ 규제 기간: 최종판 정일로부터 향후 5 년간(8~55%)	규제중 (종료예정일: 2007.04.24)
	2	열연형강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11.3	○ 최종판정일:2002.4.15 ○ 판정결과 : 18.2% AD 관세 부과 ○ 규제 기간: 최종판 정일로부터 향후 5년	규제중 (종료예정일: 2007.04.15, INI Steel에 대해서는 재심요청 결과에 따라 2004.12.20부터 새로운 덤프세율이 적용됨.)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2	1	세탁기	7.12	○ 최종판정일: 2003.9.17 ○ 규제 기간: 예비판 정일로부터 향후 5 년간	규제중 (종료예정일: 2008.9.17, 우리기업 재심요청으 로 2004년9월 6일 TMRO 재심 개시됨.)
	2	합성수지 (HDPE)	10.11	○ 최종판정일: 2003.12.03 ○ 규제 기간: 예비판 정일로부터 향후 5년	규제중 (종료예정일: 2008.6.11, , 대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2004.11.4 재심 개시)
	3	합성수지 (LLDPE)	10.11	○ 최종판정일: 2003.12.03 ○ 규제 기간: 예비판정일로 부터 향후 5년간	규제중 (종료예정일: 2008.6.11, 현 대 석유화학은 규제에 서 제외, 2004.11.4 재심 개시)
2003	1	열연강판 (Hot Rolled Plate Steel)	8.2	○ 최종판정일: 2004.4.01 ○ 규제기간: 최종판정일로부 터 향후 5년간	규제중 (종료예정일: 2009.4.01, 동국제강은 규제에서 제외, 2004.12.24 재심 결과 발표: 2004.4월의 결정은 타당함)
2004	1	강판 (Hollow Steel Section/ERW)	3.05	○ 최종판정일: 2004.8.11 ○ 최종판정결과: 무피해	조사종결
	2	종이제품 (백판지)	12.15	-	조사중
	3	강판 (Hollow Steel Section/HSS)	12.23	-	조사중
	4	가정용 냉장고	12.31	-	조사중

[뉴질랜드]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5	1	오일필터	7월 11일	○ 최종판정일: 1996.1.6 ○ 판정결과: no dumping	조사종결
1996	1	폴리프로필렌로프	11월 11일	○ 최종판정일: 1997.1.24 ○ 판정내용 : 무혐의 (미소물량, 덤핑 입증 증거 부족)	조사종결
2000	1	세탁기	12월 12일	○ 최종판정일: 2001.6.10 ○ 규제 기간: 최종판정 일로부터 5년 ○ 판정결과: 업체별로 52-93%	규제중 (2006.6.10까지 지속)
	2	냉장고	12월 12일	○ 최종판정일: 2001.6.10 ○ 규제기간: 최종판정 일로부터 5년 ○ 판정결과: 업체별로 32-55%	규제중 (2006.6.10까지 지속)
	3	오일필터	6월 19일	○ 2000.11월 13일 제소 취하(case withdrawal)	조사종결
2004	1	오일필터	7월 20일	○ 최종판정일: 2005.1.14 ○ 판정결과 : 정흥필터 12%, 강남필터54%, 신흥공업15%, 유리에어필터155%	규제중 (2010.1.14까지 지속)

[카이로]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5	1	타이어 (Tyres, passenger car tyres, Light truck tyres, Buses and lorries tyres)	7.13	○ 최종판정일: 1999.7.13 ○ 판정결과 : 우성타이 어: 승용차타이어5.5% 픽업트럭타이어: 11%, 트럭버스타이어: 17%, 금호타이어 : 미소마 진, 한국타이어 : 픽업 트럭 타이어: 6.5%	규제중 (2004년 8월 17일 부로 재심개시)

[남아공]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5	1	hydrogen peroxid	3.24	○ 최종판정일: 1996.7.5 ○ 판정 결과 : 62.5% ○ 규제기간: 2000.10.13일까지	1997년 상반기중 종료
1996	1	PTFE thread sealing tape	3.8	○ 조사중 종료된 것으 로 추정 됨	조사종결
1997	1	스테인레스 주방용기	11.2	○ 최종판정일: 1998.10.21 ○ 규제기간: 별도일몰재심까지 ○ 판정 결과: 동원금속: 무혐의 기타 6개사: KG 당 23.94- 27.28 란드	규제중
	2	자동차타이어 (passenger car tire)	1.24	○ 최종판정일: 1998.9.18 ○ 판정 결과 : 우성 무혐의, 나머지사 58.4%	2003.12.19 종료
1998	1	스테인레스 용접관	7.31	○ 최종판정일: 1998. 6. 18 ○ 규제기간: 별도일몰재심까지 ○ 판정 결과 : LG 금속 : 무혐의 기타 : 47.6%	규제중
	2	담요	4.28	○ 최종판정일: 1999.6.18 ○ 규제기간: 별도일몰재심까지 ○ 13개사 모두 : KG당 11.5란드	2004.6.18종료
	3	카본블랙	8.21	○ 최종판정일: 1999.9.20 ○ 규제기간: 별도일몰재심까지 ○ 3개사 모두: 40% 관세	규제중
	4	스테인레스 싱크대	9.4	○ 최종판정일 1999.12.17 ○ 6개사모두: 38.13% 관세	2005.1.14 일몰재심 결과 종료
	5	광케이블	10.2	○ 최종판정일: 2000.3.31 ○ 규제기간: 별도일몰재심까지 ○ 삼성전자: 49.9% 관세	규제중
1999	1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5.28	○ 최종판정일: 2000.3.3 ○ 한솔화학 : 147% 동양화학: 167%관세	2005.3.3 일몰재심 결과 종료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9	2	Inner tubes of rubber for tyres	6.4	○ 최종판정일: 2000. 5. 19 ○ 판정 결과 : 동아타이어 고무(주) 7.6% 홍아 기업 : 8.8% 기타 : 57.7%	2001년 하반기 중 규제 종료(철회)
2000	1	SUPENSION PVC	3.27	○ 최종판정일: 2001.6.5 ○ 규제기간: 별도일몰재심까지 ○ 우리업체모두: 42.51%	규제중
	2	연선,로프, 케이블	9.13	○ 최종판정일: 2002.8.28 ○ 규제기간: 별도일몰재심까지 ○ 7개사 모두 10.4% 관세	규제중

[일 본]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0	1	폴리에스터 단섬유	4.23	○ 최종판정일: 2002.7.27 ○ 덤핑마진 : 0~13.5%	규제중 (2007.6.30 종료예정)

[중 국]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7	1	신문용지	11.10	○ 최종판정일: 1999.6.3 ○ 판정 결과: 55~78% 반덤핑 관세 부과 ○ 규제기간: 1998.7.10 일부부터 향후 5년간 ○ 2004.6.30 일몰재심 결과 5년 연장	규제중
1999	1	폴리에스터 필름	3.16	○ 최종판정일: 2000.8.25 ○ 판정 결과: 13~36% 반덤핑 관세 부과	규제중 (현재 일몰재심 절차 진행중)
	2	스텐레스 냉연강판	6.17	○ 최종판정일: 2000.4.13 ○ 판정 결과: 6~58% 반덤핑 관세부과	규제중 (2004.10.13일자 발표 를 통해 2005년 4.13 종료예정임을 공표)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0	1	폴리우레탄 발포제	12.20	○최종판정일:2001.8.16 ○판정결과:4~28% 반덤핑관세 부과 ○규제기간: 최종판정일 로부터 향후 5년	규제중
2001	1	폴리스틸렌	2.9	○최종판정일:2001.12.6 ○판정결과: 무혐의	조사종결
	2	라이신	6.19	○최종판정일:2002.9.29 ○판정결과:무혐의	조사종결
	3	폴리에스터 단섬유	8.3	○최종판정일:2003.2.3 ○판정결과:2~48% 반덤핑관세 부과	규제중
	4	폴리에스터칩	8.3	○최종판정일:2003.2.3 ○판정결과:5~52% 반덤핑관세부과	규제중
	5	아크릴레이트	10.10	○최종판정일:2003.4.10 ○판정결과:2~20% 반덤핑관세 부과	규제중
2002	1	아트지(동판지)	2.6	○최종판정일:2003.8.6 ○판정결과:4~51% 반덤핑관세 부과 ○규제기간:최종판정일로 부터 향후 5년	규제중
	2	무수프탈산(PA)	3.6	○최종판정일:2003.9.6 ○판정결과:0~4% 반덤핑 관세부과 ○규제기간:2003.8.31 일부터 향후 5년	규제중
	3	합성고무	3.19	○최종판정일:2003.9.9 ○판정결과:7~33% 반덤핑 관세 부과 ○규제기간: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	규제중
	4	냉연강판	3.23	○최종판정일:2003.9.23 ○판정결과:0~40% 반덤핑 관세부과	2004.9.10일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중지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2002	5	PVC	3.29	○최종판정일:2003.9.29 ○판정결과:6~76% 반덤핑관세부과 ○규제기간:2003.9.29 일부터 5년간	규제중
	6	TDI	5.21	○최종판정일:2003.11.22 ○판정결과:3~5% 반덤핑관세부과 ○규제기간: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	규제중 (2005.2.3일부로 재심 개시)
	7	페놀	8.1	○최종판정일:2004.2.1 ○판정결과:5~16% 반덤핑관세 부과	규제중
	8	MDI	9.20	○2003.11.28 제소업체 제소철회	조사종결
2003	1	클로로포름	5.30	○최종판정일:2004.11.30 ○판정결과:62%, 삼성정밀화학은 제외	규제중
	2	광섬유	7.1	○최종판정일:2005.1.1 ○판정결과:7~46%	규제중
	3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12.17	-	조사중
2004	1	골판지	3.31	-	조사중
	2	비스페놀 A	5.12	-	조사중
	3	EPDM	8.10	-	조사중
	4	핵산	11.12	-	조사중
	5	ECH	12.28	-	조사중

[대 만]

조사 개시 년도	연번	품목명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 결과	규제 종료일 (혹은 현재 지속여부)
1996	1	H-beam, hot-rolled, of iron or non-alloy steel	7.23	○최종판정일: 1998.12.14 ○규제 기간 : 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간 ○판정결과: 한국 31.48% 러시아 34.65% 폴란드: 6.12% 호주: 가격수락(1997.3.21) ○일몰재심: 2003.10.13	일몰재심 결과 규제종료
1997	1	Uncoated Stress-Relieved Steel Wires for Pre-stressed Concrete	8.14	○최종판정일: 1998.12.14 ○규제 기간 : 최종판정 일로부터 향후 5년간 ○판정결과: 한국: 25.39-42.38% 인도: 6.10-9.95% 스페인: 무피해	조사종결
1999	1	AN, Acrylonitrile or Acrylonitrile Monomer	6.1	○최종판정일 : 1999.12 ○판정결과 : 무혐의	조사종결
2000	1	Portland Cement and Clinker	12.9	○ 2001.3.20 제소업체의 제소 철회	조사종결
	2	Uncoated Stress-Relieved Steel	10.11	○최종판정일: 2001.11.26 ○판정결과 : 무혐의 (단, 신청인 재고소) ○2004.4.8 신청인의 재고소에 대해 다시 무혐의판결	제소자 再 상고 중
2001	1	Portland Cement and Clinker	6.4	○ 최종판정일: 2002.7.19 ○ 규제 기간 : 최종판 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 판정결과 : 한국 110.99-126.81% 필리핀 42.00- 104.48%	규제중

첨부 2: 조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제안서 (TN/RL/GEN/24)

I. 문제점

☐ 제소자 적격(standing rule) 기준

- 생산량 규모로 반응자의 50% 이상이 찬성함과 동시에 찬성자의 생산량이 국내산업 생산량의 25% 이상일 경우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로 인정
- 조사 개시여부는 제소자가 제출한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편향적이고(biased) 올바르지 못한 자료에 의존하여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조사 기간의 연장

- 현행 반덤핑 협정에 따르면, 조사는 1년 안에 종결되어야 되나,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그러나 조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피소업체에 큰 피해가 야기됨.

☐ 동일 품목에 대한 재조사 개시

- 이미 무혐의 처리된 품목에 대해 1년 안에 재조사를 개시할 이유가 없음.

II. 제안 내용

□ 생산량 규모로 국내 생산자의 50% 이상이 찬성시 조사 개시될 수 있도록 현행 AD 협정의 5.4항 개정

○ 현행 협정상에는 제소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pronged test를 실시하여야 하나, 지지율 기준을 50%로 개정한다면 1회의 테스트로만으로도 충분

○ 국내 생산자로부터의 지지율이 낮을 경우, 현행 협정상의 제소자격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실제 조사가 개시되었을 경우, 지지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기업은 협조할 인센티브가 없음.

- 이로 인해, 산업피해와 관련된 데이터는 불충분한 결과를 초래, 즉 부분적인 산업의 피해가 전체피해의 결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산업피해 판정이 내려지게 됨.

□ 개별기업에 의한 지지(support)를 기준으로 하고, 협회나 연합(trade associations or groups)차원에서의 제소는 카운트하지 않음.

- 5.4 항 개정

○ 조사당국이 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소자 적격 심사를 할 경우, 협회 내 반대 혹은 아무런 의견을 표출하지 않은 생산업체의 의견도 “지지”로서 간주되어 국내 생산업체의 정확한 의견 표출이 어려움.

□ 제소장에는 반드시 제소를 찬성한 모든 국내 생산업체의 명단을 기록하도록 의무화

○ 5.2(i)에 상기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정

□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수출업체나 생산업체가 코멘트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조사 개시에 관한 제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공고 이후,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 수출국 정부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공고 이후 (x)주가 지난 후, 당국은 조사 개시여부를 판단할 경우, 상기 코멘트를 참작
- 현행 협정 5.5. 항의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의 항목을 “ 협정 5.0) 항에 의거 조사 개시에 관한 제소장을 공고할 때까지”로 대체

□ 현행 협정 5.10항을 개정하여 조사 기간이 최대 ()개월을 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연장 공고를 발표한 후,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통보

- 현행 최대 18개월의 조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출자 혹은 생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줌.

□ 동일 품목에 대한 연이은(back to back) 조사 개시 금지

- 이미 무혐의 처리된 품목에 대해 1년 안에 재조사를 개시할 이유가 없음.

첨부 3: 일몰재심 제안서(TN/RL/W/76)

I. 문제점

- ☐ 현행 반덤핑 협정 제11.3조에 의하면 반덤핑 결정은 일부 제한적인 단서 조항을 제외하면 5년 이내에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단서조항이 남용되어 반덤핑결정의 지속이 사실상 (de facto) 관행으로 정당화되고 있음.

II. 제안 내용

- ☐ 모든 반덤핑 조치는 예외 없이 5년 후 자동종료 되어야 함
- ☐ 반덤핑조치의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새로운 조사를 개시해서는 안되나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6개월이 지난 후에 조사 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III. 제안 설명

- ☐ 일몰재심과 관련한 이행기록은 ADA 제11.3조 단서조항의 남용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 단서조항의 "likely" 기준은 본질적으로 예상에 기초하며, 실질적으로는 입증책임을 수출국에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킴.
- ☐ 조사개시만으로도 수출기업의 무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덤핑조치 종료 후 유예기간(최소한 일반적인 조사의 자료수집기간과 동일한 1년)을 부여하여 시장에서 다시 공정한 조건하에 경쟁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첨부 4: 연도별/국별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E U	3(3)	1	3(2)	4(4)	7(3)	2(1)	1	0	0	3 (2,조사중1)	24
콜롬비아	1(1)	0	0	1(1)	0	0	1(1)	0	0	0	3
베네수엘라	0	0	1(1)	0	0	0	0	0	0	0	1
호주	0	1(1)	2(1)	0	4(3)	1	2	3	1	4 (1,조사중3)	18
뉴질랜드	1(1)	1(1)	0	0	0	3(1)	0	0	0	1	6
말련	1	0	1	0	0	0	0	1(1)	1	1	5
캐나다	1(1)	0	0	1	1	0	1(1)	0	2	0	6
대만	0	1	1	0	1(1)	2(2)	1	0	0	0	6
필리핀	0	0	1(1)	0	1	0	0	0	0	0	2
페루	1(1)	0	0	0	0	0	0	0	0	0	1
파키스탄	0	0	0	0	0	0	0	0	0	1	1
터키	0	0	0	1	3	0	0	0	0	2(조사중1)	6
태국	0	0	0	1	3	0	0	0	0	2(조사중1)	5
이집트	1	0	0	0	0	0	0	0	0	0	1
칠레	0	0	0	0	0	3(3)	0	0	0	0	3
중국	0	0	1	0	2	1	5(2)	8(1)	3(조사중1)	5(조사중5)	25
일본	0	0	0	0	0	0	1	0	0	0	1
인니	0	1(1)	0	1	1	1(1)	1(1)	1(조사중1)	3 (1,조사중1)	0	9
인도	0	3	1	2(1)	6(1)	1	4	5(1)	6(3)	1(조사중1)	29
미국	1(1)	1(1)	3(2)	4(2)	6(3)	3(1)	2(1)	1	2(1)	1(1)	24
남아공	1	1(1)	2	5	2	2	0	0	0	0	13
브라질	0	0	0	0	1	1(1)	1(1)	0	0	1(1)	4
멕시코	0	0	0	0	1	1(1)	0	0	0	0	2
아르헨	1	0	0	1(1)	2	1(1)	3(1)	1	0	2(조사중2)	11
합계	12(8)	10(5)	17(7)	20(9)	38(11)	22(12)	23(8)	23 (1,조사중4)	18 (2,조사중5)	23 (5,조사중14)	206

주: 괄호 안 숫자는 확정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 케이스, 조사 중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를 나타냄.

작성자

■ 통상전략팀 이정선

WTO 설립 이후 10년간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분석

발행인 : 채 훈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